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9. 1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: 2020년 8월 21일
- 나. 발 의 자: 윤준용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: 2020년 8월 24일
- 라. 상정일자: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8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윤준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,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아동보호구역의 지정·공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아동보호구역 관련 사업추진, 실태조사, 시설물 설치 등
(안 제5조 ~ 제8조)

-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선영)

- 본 건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,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.

- 주요내용은

- 안 제4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·공고에 관한 사항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정비·유지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
-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을 상대로 한 유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동보호구역 지정·공고,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 등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

(윤준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0년 8월 일

발의자: 윤준용 의원 외 명

1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,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보호구역의 지정·공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아동보호구역 관련 사업추진, 실태조사, 시설물 설치 등
(안 제5조 ~ 제8조)
- 다.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0. 8. 21. ~ 8. 25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,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 등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복지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 및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, 영등포구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영등포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아동보호구역의 지정·공고)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,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5조(사업추진)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아동보호구역 지정
2.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정비·유지에 관한 사항
3.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)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 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정비·유지)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설물 설치 등)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.

제9조(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,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, 관할 경찰서장, 관할 지역교육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원 등)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